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6,700,000	15,201,000
일반회계	425,000,000	12,750,000
특별회계	81,700,000	2,451,000
공기업특별회계	12,900,000	387,000
공기업특별회계	12,900,000	387,000
기타특별회계	68,800,000	2,064,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200,000	366,000
수질개선특별회계	2,247,000	67,41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110,000	63,3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900,000	27,0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2,110,000	63,300
주택사업특별회계	730,000	21,90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470,000	14,100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800,000	54,000
치수사업특별회계	3,650,000	109,50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550,000	46,500
대지보상특별회계	1,000,000	30,00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33,000	99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0,000,000	1,200,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사업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21,45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